

1. 개정이유

쌀 생산 과정에서 적정 시비가 이루지고 소비자들이 밥맛 좋은 쌀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곡의 표시사항 중 단백질 함량표시를 임의표시사항에서 의무표시사항으로 개선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쌀 생산 과정에서 적정 시비가 이루지고 소비자들이 밥맛 좋은 쌀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곡의 표시사항 중 임의표시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단백질 함량표시를 의무표시사항으로 개선하려는 것임

- 단백질 측정 장비 구입 및 측정 등이 어려운 영세 가공업자 등을 고려하여 단백질 함량 표시 중 미검사 항목을 추가
- 산지 쌀 유통업체의 단백질 측정기 보급, 포장재 교체 준비 등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 경과 후로 설정
- 기존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은 시행 후 6개월까지 병행 사용이 가능토록 경과조치 설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 없음

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4 제1호가목에 8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.

8) 단백질 함량 표시(흑미·향미를 제외한 멍쌀만 해당함)

가) 해당하는 함량에 “○” 표시하되 함량의 구분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

나) 단백질 함량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“미검사”로 표시

다) “가공용”이라고 표시한 쌀은 함량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

별표 4 제2호가목1)라) 표 안의 “단백질함량(임의표시)”, “수, 우, 미”, “2024”, “2015. 7. 7.”을 각각 “단백질함량”, “수, 우, 미, 미검사”, “2024”, “2025. 1. 7.”로, 같은 표 하단의 기호(*)중 “임의표시사항이며, 해당”을 “해당”으로 하고, 같은 목 2)나)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양곡의 표시사항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장양곡에 표시된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은 시행

후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곡의 표시사항
및 표시방법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[별표 4]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(제7조의3 관련) 1. 표시사항 가. 의무표시사항 1) ~ 7) (생략) <u>< 신설 ></u> 나. 임의표시사항 <u>쌀의 경우 단백질함량을 표시하되, 함량의 구분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</u> 2. 표시방법 가.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1) 위치 가) ~ 라) : (생략)	[별표 4]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(제7조의3 관련) 1. (현행과 같음) 가. (현행과 같음) 1) ~ 7) (생략) 8) <u>단백질 함량 표시(흑미·향미를 제외한 맵쌀만 한함)</u> <u>가) 해당되는 함량에 “○” 표시하되</u> <u>함량의 구분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</u> <u>나) 단백질 함량 검사를 하지 않은</u> <u>경우에는 “미검사”로 표시</u> <u>다) “가공용”이라고 표시한 쌀은 함량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</u> <u>나. (삭제)</u> 2. (현행과 같음) 가. (현행과 같음) 1) (현행과 같음) 가) ~ 라) : (생략)

품목	쌀	중량	20kg
품종	추청	단백질함량 (임의표시)	수, 우, 미
등급	특, 상, 보통	단백질함량이 낮을수록 밥맛이 우수	
생산연도	2014	도정연월일	2015. 7. 7.
생산자 (가공자 또는 판매원)	주 소	OO도 OO군 OO로 OO	
	상호명(성명)	OO미곡종합처리장	
	전화번호	OOO)OOO-OOOO	

* 등급 표시는 해당 등급에 ○ 표시하되, 표시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“등외”로 표시

* 단백질함량은 임의표시사항이며, 해당 사항에 ○ 표시

* 원산지는 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표시

2) 글자크기

가) 의무표시사항

나) 임의표시사항

글자크기 제한 없음

품목	쌀	중량	20kg
품종	추청	단백질함량	수, 우, 미, 미검사
등급	특, 상, 보통	단백질함량이 낮을수록 밥맛이 우수	
생산연도	2024	도정연월일	2025. 1. 7.
생산자 (가공자 또는 판매원)	주 소	OO도 OO군 OO로 OO	
	상호명(성명)	OO미곡종합처리장	
	전화번호	OOO)OOO-OOOO	

* 등급 표시는 해당 등급에 ○ 표시하되, 표시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“등외”로 표시

* 단백질함량은 해당 사항에 ○ 표시

* 원산지는 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표시

2) (현행과 같음)

가) (현행과 같음)

나) (삭제)